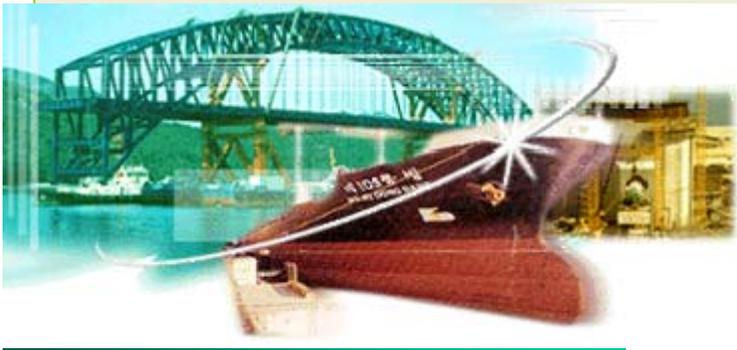


제7주 통관관련협정

- 제1절 원산지규정
-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 제3절 위생 및 검역조치
- 제4절 선적전검사
- 제5절 수입허가절차



2.1 기술장벽의 의의

■ 1. 기술장벽의 의의

- 무역상 기술장벽이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의미
- 또한 TBT협정은 주로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칭 Standards Code(표준협정)라고도 칭함

■ TBT 협정의 주요용어

- 기술규정 :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공정,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것
- 표준 : 상품의 특성, 공정, 생산방법의 반복 사용을 위해 규정되며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비강제적(임의적)인 것
- 적합성 평가절차 : 기술규정 및 표준의 관련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절차
 - 표본추출, 시험, 검사, 평가, 검증, 적합보증, 등록, 인증, 승인 등

2.1 기술장벽의 의의

■ 2.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의 연혁

- 1947년 GATT 발족 이후 제7차 Tokyo Round(1973-1979)에서는 비관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s)의 제거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
 - 제6차 Kennedy Round까지는 주로 관세인하협상이 전개
 - Tokyo Round에서 비관세장벽 관련 6개 협정이 체결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 반덤핑협정, 관세평가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정부조달협정, 수입허가협정
- TBT협정은 미국, EC, 일본 등 38개국이 가입한 복수국간 협정으로 체결되어 1980.1.1 발효되었고 한국은 동년 10월 가입
 - 이후 WTO의 발족(1995.1.1)으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할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
- TBT협정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등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

2.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1. 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 ❖ 협정의 구조 : 전문 + 15개 조문 + 부속서 3개
- ❖ 협정의 내용 ① 일반규정(적용범위), ② 기술규정 및 표준, ③ 적합성판정절차,
④ 정보 및 지원 ⑤ 기구와의 협의 및 분쟁해결(제도적 규정)
⑥ 최종조항

2.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1. 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 협정의 특징

- GATT : 복수간협정(PTA) → WTO : 다자간협정(MTA)
- 중앙·지방정부, 비정부기관 운영의 강제규정 및 임의규정인 표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해결 체제도 강화
 - GATT체제하에서는 중앙정부 운영의 강제기술규정으로 범위가 한정
-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Performance) 위주에서 생산 및 공정방법(PPMs: Production and Process Methods)까지 확대
-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공정관행규약」을 신설(TBT협정 부속서3)
 - WTO 출범 이후 회원국 표준화기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향을 제시
- 사무국 통보시 반드시 WTO 공용어를 사용하되, 답변자료 제공시에는
 -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WTO 공용어를 사용하고 개도국은 자국어 사용 가능
- 아국의 경우 WTO 통보문은 영어로 송부하지만 기타 관련규정·자료송부·답변 등은 한글문서로 제공 가능
- 분쟁발생시 GATT체제하의 권고수준에서 벗어나 WTO 체제에 따라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가 가능한 강력한 DSB(Dispute Settlement Body) 체제로 전환
-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협정을 신설하여 TBT에서 분리

2.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1. 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 협정의 기본목적

• 인간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

예컨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전기용품에 의한 화재, 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한 행정목적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포획 가능한 어류 크기의 제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포획금지 등

• 환경보호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

• 기만적 관행 방지

허위, 과장 또는 잘못 표기된 상표의 부착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원산지표시)

• 국제무역 원활화에 기여

- ✓ 국제표준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물류비 절감, 국제교류 원활화
- ✓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2.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2. 협정의 적용대상 예외

- **정부기관에 의한 구매명세서**
 - ✓ 정부기관의 생산 및 소비를 위해 정부기관이 작성된 구매명세서는 적용배제
 - ✓ 이는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 적용됨
- **위생 및 검역조치**
포획 가능한 어류 크기의 제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포획금지 등

2.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3. 기술규정 및 표준

1) 기술규정 채택의 기본 원칙

- ❖ 강제적 기술규정은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방지, 안전, 인간·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를 위해 채택·적용 가능
 - 이 경우에도 과학적·기술적 근거, 상품 최종용도 등을 고려하여 합법적 목적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해서는 안됨
 -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준수할 것

2) 기술규정 채택의 일반원칙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운용하지 말 것(목적달성에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말 것)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인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고, 회원국에게 그 규정을 제공해야 하며 정당성을 설명해야 함
- 덜 무역제한적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기술규정을 채택해야 할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술규정을 폐기할 것

3) 국제표준의 활용

- 목적달성에 부적절하지 않는 한 국제표준을 기초로 제정할 것

2.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3. 기술규정 및 표준

4) 외국 기술규정의 동등성

- 타국의 기술규정으로 기술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타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것

5) 통보

- 국제표준과 달리 기술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WTO사무국을 통해 타회원국에게 통보하거나 간행물에 공표하여야 함
- 규정 공표와 시행의 시차를 두어 관련국(특히 개도국)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것

2.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4.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성 판정절차

❖ 적합성 판정절차란 어떤 상품이 자국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절차를 말함

1) 일반원칙

-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
- 가능한 한 신속히 타국 상품에게 불리하지 않은 순서로 실시
- 절차에 대한 접근성 보장(정보의 비밀 존중)
-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래를 초래하지 않을 것

2) 적합성 판정절차의 운용

-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
- 표준처리시간 공표(요청이 있을 경우 예상처리기간 통보)
- 적합판정을 받은 후 상품명세가 변경된 경우, 당해 상품의 적합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절차만(처음부터가 아니라)

3) 상호인정

- 타국의 적합성판정절차가 자국과 다르더라도 자국의 절차에 상응하는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다면 타국의 절차를 수용하는 것을 말함
- WTO 권고사항

2.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5. 정보 및 기술지원

❖ 질의처(equity point) 및 국가표준기관의 설치

- 표준화 제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각 회원국은 문의처를 설치, 타회원국 내의 이해당사자의 문의에 응답하고 문서를 제공할 것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판정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 국가표준기관을 설립하고 특히 개도국회원국에게 조언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

■ 6. 공정관행규약

❖ 질의처(equity point) 및 국가표준기관의 설치

- 표준화 제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각 회원국은 문의처를 설치, 타회원국 내의 이해당사자의 문의에 응답하고 문서를 제공할 것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판정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 국가표준기관을 설립하고 특히 개도국회원국에게 조언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

2.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7. 개도국 우대

- ❖ 개도국 특수 상황을 감안, 그들의 개발, 재정적 필요 및 무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국제표준 채택의 예외 인정
- ❖ 선진국의 기술지원을 명시하여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가 개도국의 수출증대와 시장다변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

■ 8. 분쟁해결

- ❖ TBT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분쟁은 DSB에 통고하여 해결
 - 분쟁발생시 조사단(Panel) 및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s Group)에서 협정 위배여부를 판단하여 권고 또는 판결조치
- ❖ DSB는 판결의 이행상태를 감독하고 특정국에 대하여 협정상외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중지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 보유

2.3 향후 TBT협정의 주요 쟁점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1. 이행 및 제도개선

- ❖ 통보의무 방법 및 절차의 비 효율성
 - 협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원국의 통보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통보문의 작성/통보/회람 등의 절차 및 시간의 과다소요
- ❖ 제기되고 있는 논의의 쟁점
 - 통보문의 번역시간 단축과 의견개진 시간의 연장안 제의
 - 통보문의 접수 및 회람의 신속화를 위해 WTO 웹사이트에 중앙문서등록처 설치 제의
 - 제도개선을 위한 기술지원과 상호인정 문제

2.3 향후 TBT협정의 주요 쟁점

■ 2. 상표부착 문제

1) 상표부착 관련 쟁점

- EU 내의 환경라벨(Eco-label) 부착 추세 확산
-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상표표시 의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입국과 이에 대한 수출국의 반발
- EU의 노동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된 노동라벨 부착문제 대두

❖ 문제점

- 문제가 환경라벨에 국한된 것이라면 무역 및 환경위원회에서, 그리고 농산물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농업위원회에서 논의되면 될 것임, 그러나
- 상표문제는 어느 특정 품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TBT 협정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2.3 향후 TBT협정의 주요 쟁점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2. 상표부착 문제

2) 환경라벨제도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상품의 생명주기 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환경친화성’ 을 정부 또는 공인기관이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표시를 상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 환경라벨제도는 원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
 - 독일/네덜란드 : 특정염료 사용 섬유류의 수입/판매 금지
 - EU : 휴대용 PC에도 환경라벨 부착
- ❖ 각국마다 상이한 환경라벨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 대표적으로 ISO는 산하 기술위원회를 통해 환경라벨제도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2.3 향후 TBT협정의 주요 쟁점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3.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제 문제

- ❖ GMO 표시의무화 국가 : 한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 상당수 국
 - ❖ 기존 식품과 성분이 크게 다르거나 알려지 반응이 있을 경우에만 부착하도록 의무화 국가 : 미국, 캐나다.
-
- ❖ GMO 수출국(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 GMO 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과학적 구성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경우 기존식품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예컨대 알려지와 같은 건강상 위험요소 포함여부의 과학적 입증 없이 별도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명백한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
 - ❖ GMO 수입국(EU 등) : GMO가 아직까지 안전한지 여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그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기존식품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및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2.4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1. 미국

❖ 연방정보/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안전평가의 수가 무려 2,700여건이나 되는 등 많은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1) 청정에너지 및 보안법

- 온실가스 저감 목적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청정에너지 및 보안법 제정
- 2020년부터 수입업자에게 배출권 매입을 의무화할 경우 WTO협정에 대한 위반 및 통상마찰 가능성 존재

2) 승용차, 트럭 온실가스 감축 및 연비개선

-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 : 자동차제조 및 수입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 의무화(기업평균연비제 도입)=위반시 벌금부과
- 에너지독립 및 안보법 : 현행 연비(11.6km/L) → 2020년(148km/L)
- 승용차 및 트럭 온실가스 감축 및 연비개선 시책(환경청) : 2016년 모델의 온실가스(CO₂) 배출기준(155km/L), 연비(15km/L)

2.4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1. 미국

❖ 연방정보/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안전평가의 수가 무려 2,700여건이나 되는 등 많은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3) 포름알데히드 함량기준

- 합판, 중밀도 섬유판, 경목 베니어 합판 등의 포름알데히드 배출기준 도입(2009, 캘리포니아주)
- 합판 공급업자, 마루판제조 및 소매업자 등 모든 공급체인 내 업체는 동 기준에 적용하기 위한 비용증가로 대미수출 장애로 등장

4) 제3자 평가시스템

- 미국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수입 전자제품에 제3자 평가를 통과 하도록 의무화
- 연방정부/지방정부 요구 안정평가 : 2,700여건
- 복잡/다양한 평가제도에 따른 기업부담 및 평가기간(6월-1년)부담 증가

5) 라벨표시제도]

- 의류, 섬유, 자동차, 농산물 등 여러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제 시행
- 수입 섬유는 구성비 5% 이상되는 모든 재료에 대한 구성비 표시의무
- 완성차에 사용된 미국 및 캐나다산 부품 비율, 최종조립장소 표기
- 쇠고기 등 부패성 농산물의 원산지 상세표시 의무화

2.4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2. EU

1) 상이한 기술규제 기준

- EU집행위원회 시행 규칙 vs EU 회원국 국내법 시행 규제의 상이
- 수출업계의 부담 가중(국가별 규제내용 준수비용)
- WTO 및 국제기준과의 상이점 존재 : 정확한 정보 수집 곤란

2) 에너지 사용 제품의 친환경적 설계

- 전자, 전기제품을 비롯한 9개 제품군(간이 셋톱박스,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에 대해 환경배려 설계 요구
- 친환경 설계기준과 특정제품군의 구체적 기술규제와의 불일치로 적용곤란

3) 안전규제

- 개인용 PMP(휴대가능 음악재생기, 헤드폰, 이어폰 등)의 유럽안전기준 발표(2009)
 - 80dB의 송출시간(주 40시간), 89dB의 송출시간(주 5시간) 제한
- 어린이 위해 가능 라이터의 판매 전면금지
- 수입 장난감의 제조물 책임 강화

4) 환경규제

-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 시행 예정(2014년부터) : 표참조 p.196
- 신발제품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 강화(가죽구두 : 크롬 0, 신발류 : 포름알데히드 함량 제한, 고무 : N-니트로사민 함량 0, 등)

2.4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 3. 중국

1) 적합성 평가절차

- 전기기계, IT장비, 가전 및 관련부품(159종) 중국강제인증마크 부착의무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CCC면제신청 기관이 중국인증인가청 북경사무소 1개소 뿐(부담)
- 외국인투자 적합성 평가기관 6개소 뿐
- 외국 인증 획득 상품에 대한 중국의 2중 시험절차 감수

2) 과도포장규제

- 주류, 케이크, 곡물,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과다포장 제한(2007)
- 환경보호, 자원절약, 재생 및 재활용 목적

3) IT제품 시험 및 인증강제

- IT제품 정보보안 기능에 대한 중국 특유의 시험 및 인증 요구
- 국제기준과 다른 중국 표준에 대한 시험 및 인증 요구에 따른 어려움

4) 의료기기 적합성평가 절차

- 유사기관을 통한 의료기기 중복 규제 시도 : 중국식약청(SFDA),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부담스러운 검사 및 감독체계 부담

2.5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제2절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

첫째, 투명성 관련 시스템의 개선

- 현재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통보문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미약
- 각 부처의 효율적 대응
 - 예컨대 한국은 PPMS TBT적용 배제 및 GMO 표시 의무제의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부처간 업무협조를 통한 일관된 입장 정리, 한국적 전략 개발이 필요

둘째, TBT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가 양성

- 기술규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법적 근거의 정당성, 무역에 대한 효과분석, 당사국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한 전문가 양성 필요
-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

셋째, 각종 기술표준과 관련한 국제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법 체제 정비

- 현재 각종 표준관련 업무가 부처간에 분산되어 있음,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필요

넷째,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

- 한국은 농수산식품의 기술규제는 농림수산식품부, 의약제품은 식품의약청, 공산품은 기술표준원이 질의처 역할을 담당, 그러나 각 분야별 전문분야가 다르고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음 - 통일된 질의처 필요

3.1 위생 및 검역조치의 의의

❖ 위생 및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조치란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 조치

- ❖ 자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정되어 왔음(GATT 체제부터 예외로 인정)
- ❖ 그러나 GATT 체제에서는 통보의무가 없어 무역제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옴
- ❖ UR에서 논의, WTO 협정으로 도입됨

■ 1. 기본원칙

- ❖ 제14개 조문 및 3개의 부속서로 구성
- ❖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나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 필요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
 -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 금지

3.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2. 국제기준과의 조화

❖ 조 화 (제3조)

-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적용
 - ※ 관련 국제기준
 - . 식 품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 . 동물위생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 . 식물위생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기준
-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관련 규정(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규제유지 가능

■ 3. 동등성의 원칙

- 수출회원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사용조치가 자국 또는 여타국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것으로 수락

3.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4. 위험평가 및 적정보호수준 결정

❖ 위험평가 (제5조)

- 동.식물 위생 규제의 객관적 지표로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활용
-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표 고려, 또한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고려
- **위험평가지 고려요소**
 - ①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 ② 가공 및 생산방법
 - ③ 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 ④ 특정 병해충의 발생률
 - ⑤ 병해충 안전지대의 존재
 - ⑥ 관련생태학적 환경조건
- **적정보호조치 판단시 고려사항**
 - ① 병해충이 유입되어 전파될 경우 생산 및 판매에 미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한 잠재적 피해
 - ② 수입국의 박멸 및 방제비용
 - ③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수립 비용

3.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5. 병해충 발생지역의 구분

- ❖ 수출국의 지역별 특성 고려 : 병해충 발생지역 vs 병해충 미발생지역으로 구분
- ❖ 미발생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금지
- ❖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저발생 지역이라는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수출국)
- ❖ 수입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검사 및 다른 관련절차 제공의무

■ 6. 투명성

❖ 투명성 (제7조)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변경을 WTO 사무국에 통보
- 공표와 발효 사이의 시차 허용

3.3 협정의 의미와 평가

❖ 평 가

- 그간 GATT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어 오던 각국의 동·식물 위생 규제는 금번 WTO 체제하에 신설되는 협정문 안으로 편입
- 따라서 농산물 자유무역에 있어 각국의 동·식물 위생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수입규제 목적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제한되므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과학적인 검역제도로의 개선 노력필요
- 국제기구기준 및 선진 각국의 과학적인 기준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제 조치의 개선이 요구

4.1 선적전 검사의 의의

- ❖ **선적전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란 수입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수입국 정부나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국에서 물품을 선적하기 직전에 수입품의 품질이나 수량을 검사하고, 수입품의 거래가격이 원산지에서의 일반적인 수출물품 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
- ❖ PSI는 주로 개도국(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들이 시행
- ❖ **PSI 방법**
 - 수입국정부가 자국 공무원의 수출국 현지파견 검사
 - 수입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방법
 - 위 두 가지 방법의 병행
- ❖ **PSI 제도의 긍정적 측면**
 - 가격조작을 통한 탈세 및 외화도피 등의 차단
 -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로 합리적인 과세
 - 정확한 검사자료를 이용한 신속 수입통관
- ❖ **PSI 제도의 부정적 측면**
 - 추가적 비용 및 절차 소요
 - 수입업자의 영업비밀 노출
 - 검사기관의 자의적 검사, 부정담합 가능성
- ❖ **PSI제도의 남용** : 비관세장벽화 우려-WTO 협정의 마련

4.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1. 선적전 검사의 정의와 적용범위

- ❖ 전문 및 본문 9개조로 구성
- ❖ 회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적적 검사활동에 적용

4.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2. 당사국의 의무

1) 사용국(수입국)의 의무

- ① 무차별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준수
- ② 수출되는 관세영역 내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것
- ③ 구매계약에 약정된 품질 및 포장기준을 표준으로 할 것(표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따를 것)
- ④ 투명성 : 수출자에게 검사요건 충족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공표
- ⑤ 영업비밀 보호 :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의 비밀보장
- ⑥ 부당한 검사지연 금지
- ⑦ 가격검증은 비교가능한 판매조건 하에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출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동정 또는 유사상품의 가격을 기초로 할 것
- ⑧ 수출업자가 제기된 불만의 처리 및 이의절차에 대한 정보 입수 보장
- ⑨ 최소금액 선적분에 대한 검사면제 보장

2) 수출국의 의무

- ① 무차별원칙 준수
- ② 선적전 검사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표할 것
- ③ 사용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국에 대한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4.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3. 독립적 심사절차

- ❖ 선적전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분쟁을 상호 해결하도록 장려
- ❖ 그러나, 각 당사자는 불만의 제출 후 2근무일 경과 후 분쟁을 독립적 검토에 회부가능
- ❖ 독립적 검토절차는 선적전 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독립기관에 의해 운영

4.3 협정의 의미와 평가

❖ 평가

- 전체적으로 수출국과 사용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
- 사용국(PSI 운용 개도국) 입장을 반영하여 수출국이 제3국에 수출한 가격을 가격검증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당초 수출국들은 동일 수출·입국간 거래가격만을 가격검증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
- 반면,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적 검토의 결과가 PSI기관 및 수출업자를 구속한다고 규정
 - 당초 사용국(PSI 운용 개도국)들은 독립적 검토 결과의 준수여부는 PSI 운용국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국의 입장인 바,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사용국의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자의적 운영이 사실상 방지되어 동남아 및 중남미 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여건 개선 기대
- 협정이 수출국에 부과하는 의무사항은 대부분 선언적 규정이므로 국내 법규의 개정 등 특별한 조치 불요
 - 다만, PSI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적 검토절차 등 운용 절차에 관한 국내 규정 마련이 필요

5.1 수입허가절차의 의의

❖ 수입허가절차(importing licensing procedures) 제1조

수입허가란 수입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관련 행정관청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문서(통관 목적으로 요구되는 문서가 아닌)의 제출을 요구하는 수입허가제도의 운영에 사용되는 행정절차를 말함

❖ WTO 수입허가절차의 협상배경

- 통경라운드(1980.1)에서 각국의 수입허가제도의 비관세장벽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허가절차 협정이 제정되었으나 내용상 불명확한 점이 많아 제정되었으나
- 제정 취지와는 달리 각국의 수입허가절차가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데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UR협정에서 동 규정의 명료화 단순화를 위한 협상 착수

❖ 협정의 구조

- 전문 및 8개 조항으로 구성
- | | | |
|-----------|-------------|----------------|
| ○제1조:일반규정 | ○제2조:자동수입허가 | ○제3조:비자동수입허가 |
| ○제4조:기구 | ○제5조:통보 | ○제6조:협의 및 분쟁해결 |
| ○제7조:검토 | ○제8조:최종 조항 | |

5.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1. 일반원칙 (1조)

- ❖ 수입허가절차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 수입허가절차는 1994년 GATT 규정에 부합되도록 중립적(neutral)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공정(fair)하고 공평(equitable)하게 운용되어야 함
 - 공정 :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됨을 의미
 - 영평 : 동일한 입장에 있는 신청자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심사된다는 것을 의미
 - 수입허가 관련규정 및 제반 정보는 사전 공표
 - 종래 "신속히" 공표토록 한 공표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관보 등에 이를 공표하되 가능한 한 발효 21일 이전에 공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발효이전에 공표할 것을 규정
 - 관련 규정안에 대해 회원국 의견 개진과 토의기회 부여 및 동 의견과 토의결과에 대한 적절한 고려 (신설)
 - 수입허가(갱신) 신청양식 및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하여야 하며, 서류 및 정보의 요구는 수입허가제가 적절히 기능하는 필요한 안도 내에서만 요구
 - 수입허가 신청을 위한 적절한 기간 부여
 - 21일 이상, 불충분한 서류제출시 동기간 연장

5.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1. 일반원칙

- 허가신청은 1개의 행정기관에 국한, 불가피할 경우에도 3개 기관을 넘지 못함.
 - 종래 "가능한 최소의 기관"이 되도록 막연히 규정했던 것을 최대 3개 기관으로 명확화
- 사소한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안 허가 거부 금지, 허가된 수입품은 운송 중에 발생한 차이, 대량 적하에 부수되는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물량 및 중량의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거절될 수 없음
-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환은 수입허가 필요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토록 함.

5.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2. 자동수입허가(제2조)

- ❖ 자동수입허가(AA, automatic licensing) :
 - 별도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수입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자동수입허가는 앞의 일반적 원칙 이외에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수입규제적 효과가 없도록 관리, 특히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 수입허가가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 회사, 기관에 동등한 자격 부여
 - 통관이전 언제라도 수입허가를 신청토록 허용
 - 늦어도 접수 10일 이내 수입허가 승인

5.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3. 비자동수입허가

❖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자동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앞의 일반원칙 이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제한의 부과에 의한 부담 외의 무역제한. 왜곡요과 조래금지 및 절대 필요한 정도의 행정적 부담만 부과
- 수입허가의 근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 공표 등 비자동수입허가 관련 정보 제공 및 공표 의무
- 개인, 기업 또는 기관에게 허가요건에 대한 예외 또는 일탈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시 이러한 사실 및 그 요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표
- 허가신청 소요기간은 선착순 고려시 30일, 수개 신청을 동시에 일괄 고려시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 종래 가능한 한 단기간으로 규정했던 것을 명확화
- 허가 유효기간은 수입 업무처리에 충분한 합리적 기간을 부여
- 쿼타 시행에 있어서 쿼타의 충분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
- 공급국간에 할당되지 않는 허가를 통한 쿼타 시행시 자유로운 수입품 공급처 선택 보장, 공급국간에 할당되는 쿼타의 경우 허가서상 국가의 명확한 명시
- 신규 수입자에게도 합리적인 허가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고려
- 개도국 상품, 특히 최빈 개도국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를 특별 고려

5.2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4. 통보

수입허가 절차 도입 및 변경시 공표 후 60일 이내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

5.3 협정의 의미와 평가

❖ 평가

- 기존 협정은 협정가입국 상호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PTA) 이었으나(우리나라는 미가입), UR 협상결과 새로 제정된 수입허가절차 협정은 다자간협정(MTA)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
- 종래 협정의 내용을 다소 강화, 수입허가 관련규정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자연에 의한 무역장벽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통보요건을 강화
 - 비자동수입허가의 경우 범위와 기간을 관련무역정책 수단과 연계하고 필요 이상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수입허가 신청처리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시한 설정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우리의 국내제도와 법령을 동 협정에 맞게 보완하여야 할 추가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신경계계획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함
- 이러한 우리의 제도정비 작업을 통해 관련 수출입절차가 명료화, 간소화됨으로써 우리 제도의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구체적으로는 아래사항 검토 필요
 -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정비 : 동 제도는 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 수량제한 금지 원칙 등에 위배



감사합니다.